

[별표 1]

##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처리 기준

① 대상: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

② 내용: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‘출석’으로 인정함

등교중지 대상자	인정기간	출석인정 절차	증빙서류	과제
1. 코로나19 확진자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※단, 격리기간 포함하여 4주 이상될 시 질병휴학 권고	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☞ 증빙서류 : 입원치료통지서	○	○
2. 격리 통지 받은 자 (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자로서 무증상자 포함)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 ☞ 원격수업으로 수강 대체 ※ 담당교수가 원격수업 수강 여부 확인 후, 100% 이상 수강 시 출석으로 처리	○	○
		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 ■ 교과목 담당교수 학생 연락 후, 대체과제 부여→출석 인정허가원 수령(학생 제출)→ 과제물 제출 확인 → 출석 인정 ■ 학생 출석 인정허가원(서식) 및 증빙자료 제출→ 담당교수에게 연락 후 과제물 확인→과제물 제출 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☞ 증빙서류 : 격리통지서	○	○
3.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자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 기존 절차와 동일함	○	○
		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 기존 절차와 동일함 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☞ 증빙서류 :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제출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*유의사항 : 다만, 격리 통지를 받은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,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‘음성’ 판정 시 등교 가능</div>	○	○
4. 실거주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 기존 절차와 동일함	○	○
		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	○	○

등교중지 대상자	인정기간	출석인정 절차	증빙서류	과제
		기존 절차와 동일함 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☞ 증빙서류 : 실거주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		
<b>5.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</b> ※ 의심환자: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 ※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 ※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	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 기존 절차와 동일함	○	○
		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 기존 절차와 동일함  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☞ 증빙서류 :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혹은 문자 통지 사본 혹은 진료확인서)	○	○
		* 학생이 <b>대면수업을 희망하는 경우</b> 아래의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확인 후 등교 가능 1. 선별진료소 '코로나19 음성' 결과 확인서 2.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<b>의사의 소견서 등</b>	○	○
<b>6. 단순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질환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자</b> (코로나19 검사 '음성'인 경우) ※대면(오프라인) 수업에 한하며 등교 후 의심증상으로 귀가조치자 포함	증상 발현일 포함 최대 4일	[원격수업이 가능한 경우] 기존 절차와 동일함	○	○
		[원격수업이 불가(미진행)한 경우] 기존 절차와 동일함 ☞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☞ 증빙서류 :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혹은 문자 통지 사본 혹은 진료확인서)		
<b>7. 코로나19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자</b>	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	기존 절차와 동일함	○	○

※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함.

※ 상기 1~7번 모두 과제물 대체 등으로 수업 보강 요함